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BNK금융지주

2. 조치요구일 : 2024. 2. 21.

3. 조치내용

대상	내용
기관	경영유의사항 2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자회사 경영관리 업무 강화

(가) 자회사에 대한 지주의 점검·검사 업무 강화

내규 「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 따르면, ㈜BNK금융지주(이하 “지주”)는 자회사 임직원 등의 범죄혐의 등 금융사고를 보고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자회사의 금융사고 보고 등에 대하여 조언·시정권고 및 자료제출 요구권한 등을 행사할 수 있다.

①지주 준법감시부는 경남은행으로부터 직원의 횡령 혐의 사실을 보고받았으나, 이러한 보고사항이 관련규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었는지를 점검하지 않았고, 은행에 조언·시정권고 및 자료제출 요구권한 등도 행사하지 않았다. 또한 ②지주 검사부도 과거 경남은행이 금융사고 보고 누락·지연 등으로 수 차례 지적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회사의 보고 업무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해 검사·점검한 실적이 없고, 자회사의 금융사고 발생 현황을 지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체계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자회사 금융사고 및 그 보고에 대한 지주 차원의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한편, 지주 내규「감사위원회규정」및「자회사등에 대한 검사업무규정」등에서는 지주 검사부가 자회사에 대한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주 검사부는 종합검사 계획수립 시 검사주기 등 세부 업무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부산·경남은행은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경남은행에 대하여 2014.10.10.(지주 편입)～2023.9.30. 기간 중 부문·특별검사를 총 17회 실시하였으나 현물검사 외 본점에 대한 사고예방 관련 검사는 실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지주는 자회사와 검사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그룹 감사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감사협의회 개최실적이 저조하고, 협의회 결과 회의록 작성이 누락된 사례가 있으며, 주로 지주의 검사계획·실적 등만 공유하고, 검사결과 등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지도·협조 요청 등 후속조치 사례가 없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지주 검사부는 자회사의 금융사고 보고 등이 누락 또는 지연되지 않도록 자회사가 금융사고 등을 지주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소관부서의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며, 자회사의 금융사고 중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지주 회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지주 검사부는 자회사가 지주 및 금융감독원 등에 금융사고 보고를 누락·지연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고, 자회사의 금융사고 발생 현황에 대한 지주 감사위원회 보고 체계도 마련하는 등 자회사 금융사고 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회사의 규모, 리스크, 적정 검사주기 등을 반영하여 종합검사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관련 세부 업무기준을 마련하고, 자회사 본점 등에 대한 사고 예방을 위한 검사 실시를 확대하는 등 자회사에 대한 지주의 검사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지주는 감사협의회 개최 주기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고, 회의록 작성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지주가 그룹의 리스크요인을 고려한 감사정책 및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업무 지도·협조 요청을 하는 등 감사협의회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회사에 대한 지주의 준법감시 업무 등 강화

지주는 내규 「그룹 내부통제규정」 등에 따라 ①그룹의 내부통제 관련 주요 사항 협의 등을 위해 '내부통제위원회', '내부통제협의회'를 설치·운영 중이고, ②자회사의 내부통제 현황 점검·개선을 위해 '자회사 테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①'내부통제위원회', '내부통제협의회' 등 내부통제 회의체는 주로 준법감시부와 검사부의 점검·검사 결과 및 주요 활동내용 등을 사후 보고받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내규의 제·개정, 업무처리 절차 및 기준의 마련,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선 등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한 사례가 적은 등 내부통제 회의체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②지주 준법감시부는 2021.3월~2023.8월 기간 중 총 16회의 테마점검(서면)을 실시하였으나, BNK금융그룹의 경영계획 및 전략과제와 관련한 주요 사업부문 또는 고위험 업무 등에 대하여 지주가 직접 테마점검을 실시하거나, 자회사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지주가 그 자체점검 결과를 확인한 사례는 없었다.

아울러 ①내부통제 회의체에서 제기되거나 ②테마점검 등을 통해 확인된 자회사의 내부통제상 문제점, 개선대책 등이 자회사에 전파·통보되지 않고 있으며, 각 자회사에 대한 조치·이행 사항을 사후 관리하지 않는 등 자회사의 내부통제상 문제점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하다.

한편, 2023.6월말 기준 지주에서 내부통제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은 4명(지주 총 직원수 대비 3.70%)이고, 이 중 준법감시부를 총괄하는 부장과 계약검토·소송 대리·법률 자문 등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변호사)을 제외할 경우 실무직원은 2명에 불과(부부장 및 과장)하며, 경쟁 은행지주와 비교하여도 담당인력이 부족하고, 전문성도 미흡하다.

<조치할 사항>

지주 준법감시부는 ①내부통제 회의체에서 확인된 문제점 또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 내규의 제·개정 또는 관련 시스템의 개선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 회의체 운영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②자회사 테마점검을 통해 실시 시점 전후의 금융권 주요 이슈뿐만 아니라 그룹의 경영계획 상 명시된 전략과제 등에 대해서도 장기간에 걸쳐 체계적인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PF대출 등 고위험 업무에 대한 적정성 점검을 자회사가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자회사의 점검결과를 지주가 테마점검 또는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①내부통제 회의체 또는 ②테마점검 등을 통해 확인된 자회사의 내부통제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자회사에 전파·통보·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지주 경영지원부는 준법감시부가 그룹 내부통제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충실히·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인력 수준을 검토한 후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고, 향후 준법감시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등 준법감시 담당 조직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2) 문서관리 업무 강화

내규 「문서관리규정」에서는 각 부실에서 대내외 문서수발내용을 각각 문서접수부·문서발송부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내규 「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서는 지주와 자회사 간 협의·보고사항에 대해 경영관리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수·발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주 및 자회사는 내규 「자회사 경영관리규정」에서 명시한 업무에 대해서만 경영관리시스템을 통해 문서를 수·발신하고 있으며,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 이메일을 통해 문서를 수·발신하면서 별도의 기록을 관리하지 않고 있다.

또한, 내규 「문서관리규정」은 문서의 기안방식에 있어 필요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지주 직원들은 수기로 작성한 문서를 내용 등록 없이 목록만 관리하는 등 문서관리 업무가 미흡한 실정이다.

아울러 이러한 각 부실의 문서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감사항목이 없는 등 문서의 적정 관리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지주 경영지원부는 업무시스템을 개선하여 지주 내 기안문서 및 지주와 자회사 간 수·발신한 문서의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완하고, 내규 「문서관리규정」을 개정하여 문서 기안방식의 원칙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지주 검사부는 월별 감사항목 중 대내외 문서 관리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감사항목을 신설하는 등 문서관리 업무를 강화하시기 바랍니다.